# 의료급여관리사 지원

## 1 기본 현황

### □ 사업개요

회 계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
사업기간	☑연례반복
사업내용	○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에게 의료급여 진료비용 등을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증진 도모
사업비	2,531,582천원 (국비)1,265,791천원 (시비)1,265,791천원
(당해년도)	기타 (예산 외) 〔구비〕 [기타]

## 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복지본부	희망복지지원과	김철수 2133-7370	유규용 2133-7387	류민국 2133-7390

## 2 예산설명

구 분	2017예산액 (A)	2018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	(x1,265,791)	(x1,265,791)	(x-)
	0	2,531,582	2,531,582	0
자치단체경상보조	(x-)	(x1,265,791)	(x1,265,791)	(x-)
금	0	2,531,582	2,531,582	0

(단위 : 천원)

## 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		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,531,582,000원	=	2,531,582천원

## 3 사업설명

#### □ 사업목적

○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의료급여비용을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의욕 증진

#### □ 사업근거

○ 의료급여법 제5조의2

#### □ 사업내용

○ 지원대상 :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

○ 규 모 : 의료급여수급권자 246,243명(2017. 12월말)

- 1종 : 170,553명(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, 국가유공자,

인간문화재, 북한이탈주민, 의사상자 등)

- 2종 : 75,690명(기초수급자 중 1종 이외의 자)

○ 사업기간 : 2018. 1월 ~ 12월

○ 사업내용 :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

○ 총사업비 : 2,531,582천원

- 재원분담비율 : 국비50%, 시비50%

#### □ 추진경위

- 1997년 의료보호제도 시행
- 2001년 10월 1일 의료급여법 시행
- 2003년 5월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급여관리사 배치
  - -의료급여관리사 :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 상담, 교육 등

(단위: 천원)

#### □ 2018년도 추진일정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2,531,582	
보조금 집행 및 정산	2018.01~2018.12	2,531,582	월별 보조금 집행 및 정산

## 4 사업효과

##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5년도	○ 의료급여수급권자 244,363명
2016년도	○ 의료급여수급권자 245,719명
2017년도	○ 의료급여수급권자 246,243명(2017년 12월말)

## □ 향후 기대효과

○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의료급여비용을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증진 도모